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939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 시 구

2. [REDACTED] 시 구

3. [REDACTED] 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4,144,383,703원 및 그 중 1,294,334,681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373,961,1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475,392,931원



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694,981원에 대하여는 2017. 4. 10.부터 각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8. 9. 1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365,495,074원 및 그 중 89,608,82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97,286,44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74,971,07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3,628,737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redacted]는 895,497,308원 및 그 중 258,866,936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7,921,76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91,130,837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326,852,02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725,748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8. 9. 1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 [redacted] 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원고에게, 4,164,347,454원 및 그 중 1,297,349,089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376,992,951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483,255,278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6,750,136원에 대하여는 2017. 4.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표 기재 각 이자율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¹⁾
3. 피고 [redacted] 시는 원고에게 898,279,028원 및 그 중 259,469,818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7,921,76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91,737,205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328,424,49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725,748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표 기재 각 이자율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redacted] 구 [redacted] 동1가 5-32 등 328필지 토지(이하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1)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원고에게 '365,495,075원' 및 그 중 89,608,82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97,286,44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74,971,07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3,628,738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표 기재 각 이자율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28,738원'은 '3,628,737원'의 오타이고, 따라서 '365,495,075원'은 '365,495,074원'의 오타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라 한다), ② [redacted]구 [redacted]동 372- [redacted] 등 66필지 토지(이하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중 [redacted]동7가 [redacted]-9, [redacted]동1가 [redacted]6-7, [redacted]동1가 [redacted]6-8 토지에 관하여서는 공공시설미지정 토지임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세액이 이미 환급되었는바, 위 부과처분 중 위 3필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이하 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를 '이 사건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라 하고, 이 사건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와 서구 공공시설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중 [redacted]동3가 76- [redacted]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액이 변경되어 차액이 환급되었는바,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환급된 차액 부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일자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관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초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각주로 표시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구분	납부일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3년	[redacted]구청장	정기	2013. 9. 30.	2,588,669,362 ²⁾	517,733,872 ³⁾
		수시	2017. 4. 10.	442,668 ⁴⁾	-
	[redacted]구청장	정기	2013. 10. 1.	179,217,650	35,843,530
		수시	2015. 9. 30.	36,309,536	7,573,764
		수시	2016. 5. 31.	1,337,208	267,442
2014년	[redacted]구청장	정기	2014. 9. 29.	2,747,922,220 ⁵⁾	549,584,344 ⁶⁾
		수시	2017. 4. 10.	464,788 ⁷⁾	-



2015년	구청장	정기	2014. 9. 29.	194,572,880	32,677,330
		수시	2015. 9. 30.	36,531,229	7,325,411
		수시	2016. 5. 31.	5,443,408	1,088,682
	구청장	정기	2015. 9. 30.	2,950,785,863 ⁸⁾	590,157,080 ⁹⁾
		수시	2017. 4. 10.	482,507 ¹⁰⁾	-
	구청장	정기	2015. 9. 30.	277,101,380	48,647,790
		수시	2016. 5. 31.	476,858	95,372

다.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각 피고 시 구, 시 구에 귀속되었
고, 지방교육세는 피고 시에 귀속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1995-2호 등으로 항만, 녹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들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
시가 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2) 2,594,698,178원

3) 518,939,636원

4) 4,662,840원

5) 2,753,985,901원

6) 550,797,080원

7) 3,800,194원

8) 2,966,510,555원

9) 593,302,018원

10) 5,037,237원



감경조항'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역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는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법문상 명확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1) 피고 []시 []구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 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시 []구에 2013. 9.



30. 2,588,669,362원, 2014. 9. 29. 2,747,922,220원, 2015. 9. 30. 2,950,785,863원, 2017. 4. 10. 1,389,963원(= 442,668원 + 464,788원 + 482,507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원고에게 4,144,383,703원[= 1,294,334,681원(= 2,588,669,362원 $\times$ 1/2) + 1,373,961,110원(= 2,747,922,220원 $\times$ 1/2) + 1,475,392,931원(= 2,950,785,863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94,981원(= 1,389,963원 $\times$ 1/2)] 및 그 중 1,294,334,681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373,961,1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475,392,931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694,981원에 대하여는 2017. 4.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8. 9. 13.부터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로부터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 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에 2013. 10. 1. 179,217,650원, 2014. 9. 29. 194,572,880원, 2015. 9. 30. 349,942,145원(= 36,309,536원 + 36,531,229원 + 277,101,380원), 2016. 5. 31. 7,257,474원(= 1,337,208원 + 5,443,408원 + 476,858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는 원고에게 365,495,074원[= 89,608,825원(= 179,217,650원 $\times$ 1/2) + 97,286,440원(= 194,572,880원 $\times$ 1/2) + 174,971,072원(= 349,942,145원 $\times$ 1/2) + 3,628,737원(= 7,257,474원 $\times$ 1/2)] 및 그 중 89,608,82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97,286,44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174,971,07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3,628,737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8. 9.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redacted] 시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 및 피고 [redacted] 시 [redacted] 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무효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지방교육세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redacted] 시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지방교육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9. 30. 517,733,872원, 2013. 10. 1. 35,843,530원, 2014. 9. 29. 582,261,674원(= 549,584,344원 + 32,677,330원), 2015. 9. 30. 653,704,045원(= 7,573,764원 + 7,325,411원 + 590,157,080원 + 48,647,790원), 2016. 5. 31. 1,451,496원(= 267,442원 + 1,088,682원 + 95,372원)을 각 지방교육세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 시는 원고에게 895,497,308원[= 258,866,936원(= 517,733,872원 $\times$ 1/2) + 17,921,765원(= 35,843,530원 $\times$ 1/2) +



291,130,837원(= 582,261,674원 $\times$ 1/2) + 326,852,022원(= 653,704,045원 $\times$ 1/2) + 725,748원(= 1,451,496원 $\times$ 1/2) 및 그 중 258,866,936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7,921,76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91,130,837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326,852,02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725,748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8. 9. 13.부터 피고 인천광역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윤선

판사 권혁재

판사 박미영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적용시기	이자율	비고
2011. 4. 11. ~ 2012. 2. 29.	3.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 2조 (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2. 3. 1. ~ 2013. 2. 28.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3. 3. 1. ~ 2014. 3. 13.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4. 3. 14. ~ 2015. 3. 5.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5. 3. 6. ~ 2016. 3. 6.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6. 3. 7. ~ 2017. 3. 14.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7. 3. 15. ~ 2018. 3. 18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8. 3. 19. ~ 현재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60조 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2

의 인가